

■ 안전보건공단

구분	담당부서	관할지역	연락처
서울지역본부	사업지원부	서울, 강원도	T. 02-6711-2851 02-6711-2856 F. 02-6711-2859
인천지역본부	사업지원부	인천, 경기도	T. 032-5100-531 032-5100-532 F. 032-574-6175
부산지역본부	사업지원부	부산, 울산, 경상남도	T. 051-5200-528 051-5200-537 F. 051-520-0539
광주지역본부	사업지원부	광주, 전라남도, 전라북도, 제주도	T. 062-949-8746 062-949-8748 F. 062-944-8273
대구지역본부	사업지원부	대구, 경상북도	T. 053-6090-526 053-6090-583 F. 053-421-8629
대전세종지역 본부	사업지원부	대전, 세종, 충청남도, 충청북도	T. 042-620-5614 042-620-5616 F. 042-632-4787

■ 한국환경공단

구분	연락처
대표 연락처	T. 032-590-4991

■ 한국가스안전공사

구분	연락처
대표 연락처	T. 042-750-1378, 1339

유해화학물질
취급시설
검사 및 안전진단

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(북정동)

유해화학물질
취급시설
검사 및 안전진단

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

설치·정기·수시검사

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5 및 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」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법적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.

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-10호 <'17. 12. 28.>

검사의 종류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에 따라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.

검사·안전진단 방법 및 항목

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검사 및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.

환경부 고시 제2016-195호 <'16. 10. 10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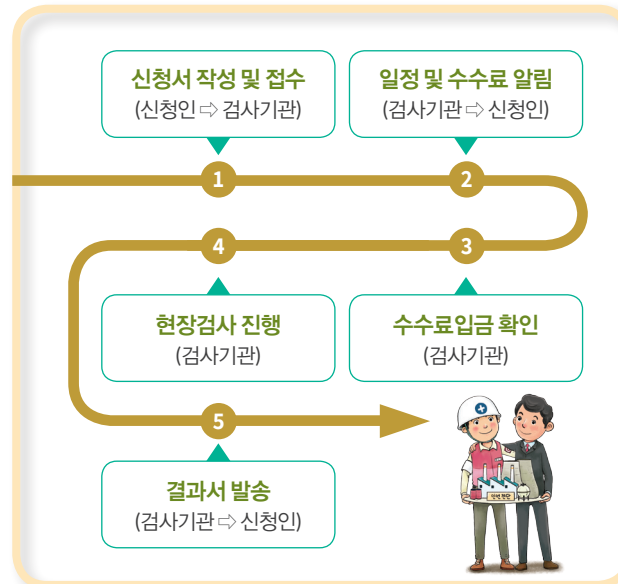
검사항목,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은 「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환경부 훈령 제1285호 <'17. 12. 21.>

검사·안전진단 시기/주기

구분			시기 / 주기
설치검사			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
정기 검사	영업허가 대상인 경우		1년 마다 (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)
	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		2년 마다 (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)
수시 검사	화학사고 발생		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
	화학사고 발생 우려		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
안전 진단	설치/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		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
	장외 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	결과 없는 경우	4년 마다
		고위험도	4년 마다
		중위험도	8년 마다
		저위험도	12년 마다

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



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의 산정

- 수수료 부과근거: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
- 검사·안전진단 수수료는 제조사용, 실내저장보관, 실외저장보관, 지하저장보관, 차량운반시설 및 설비, 배관이송설비 등 시행규칙 [별표5]에서 규정한 시설별로 구분하고, 각 시설별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.
- 세부내용은 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환경부 고시 제2018-23호 <'18. 2. 9.>

※ 검사·진단 수수료: 관할 지역본부 연락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

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의 산정

구분	기준 및 적용 검사표 (근거: 환경부고시 제2015-30호)	검사표 적/부 판정기준
기존 시설	'14. 12. 31. 이전 설치·운영·착공시설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[별지 제16호서식]~[별지 제21호서식] 적용	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으로 검사 및 판정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주요사항: 권고
신규 시설	'15. 1. 1. 이후 착공시설 설치검사 [별지 제4호서식]~[별지 제9호서식] 적용 정기·수시검사 [별지 제10호서식]~[별지 제15호서식] 적용	화학물질관리법 으로 검사 및 판정

※ 기존시설 수수료 산정(유해법) 적용 기한: 2019. 12. 31.

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 웹사이트*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신청

* 웹사이트 주소: <http://kosha.or.kr/cheminsp>

※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시 문의사항은 각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

※ 신청양식: 환경부 고시 제2016-195호 <'16. 10. 10.> 별지서식